

의안번호	2212910
의 퇴 인	신장식의원
회 답 일	2025.10.22.
추계번호	25D512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의6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의6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되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업자(법인)의 주채무를 감면하였는데, 최근 6년간 그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 채무감면 현황: 2020~202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대보증인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인원	감면액	인원	감면액	인원	감면액	인원	감면액	인원	감면액	인원	감면액
주채무자(법인)	있음	21	5,995	20	4,294	19	5,321	25	9,257	21	6,424	12	1,682
	없음	4	292	3	822	4	203	5	742	4	235	3	293
	합계	25	6,287	23	5,116	23	5,524	30	9,999	25	6,659	15	1,975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법인)의 주채무가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된 반면 그 연대보증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 채무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연대보증채무	5,995	4,294	5,321	9,257	6,424	1,682

주: 위 금액은 채무자(법인)의 주채무가 감면되었으나,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부실채권 금액의 합계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한편, 개정안은 부칙¹⁾에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이후 면책을 받은 주채무의 연대보증채무만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선고를 통해서 면책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채무와 이와 관련된 연대보증채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 그런데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면책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규모를 추정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기금수입의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 참고로, 연대보증제도는 폐지(2018.4.)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른 감면 대상 연대보증채무는 2018년 4월 이전 발생하여 현재 부실채무로서 개정안에 따라 면책받지 않더라도 회수되어 기금의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